

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곽영학

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허창원 의원 등 6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19년 1월 6일

○ 회부일자 : 2019년 1월 7일

3. 제안이유

-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주거복지 증진사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
- 소관부서 변경 등의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입주자 지원 기본계획 수립 구체화 (안 제5조)
 - 입주자의 거주 및 복지실태, 시설개선 등 주거환경개선, 입주자의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 등 기본계획 수립에서 반영해야 할 사항 구체화
- 명칭변경 (안 제6조)

- 주거복지 상담사 → 주거복지사
- 주거복지증진 사업지원 신설(안 제7조)
- 소관 국 변경 (안 제20조)
 - 보건복지국 → 문화체육관광국
-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한 자구 개정
 - 기여하는 → 이바지하는, 수립한다→세운다, 부의하고→회의에 부치고, 통지하여야→ 알려야 등

5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주거복지 증진사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소관부서 변경 등의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,
 - 안 제5조에서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입주자의 거주 및 복지실태, 시설개선 등 주거환경개선, 입주자의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였으며
 - 안 제6조에서는 기존 “주거복지 상담사”가 “주거복지사”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였음.
 - 안 제7조에서는 주거복지 증진사업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주거복지 지원 사업으로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,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개선 사업, 노약자·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증진 사업,

노후시설의 보수 및 개선사업, 정신장애인,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, 지원 프로그램 개발 사업, 독거노인, 장애인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사업으로 구체화 하였음.

- 안 제20조에서는 소관 국을 종전에 보건복지국에서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변경하였으며
- 그 밖에 조례 전반에 있는 자구를 국어 어문규정이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개정을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 판단되며 이견은 없음.

○ 이 조례는 2014년 12월에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지원 실적이 미약한 실정임. 이번 조례 개정으로 충청북도와 시군에서는 주택 시설개선 뿐만 아니라 자활, 상담, 돌봄서비스 등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체적인 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

붙임: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. 끝.